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선택한 경우의 []에 V 표 합니다.)

예

아니오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① 연번	② 국가명	③ 국가 코드		당기 공제대상 세액		⑥ 국가별 공제 한도	⑦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⑧ 이월배제액	⑨ 차기이월액
				④ 전기 이월액	⑤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1	미국	U	S		12,000,000	8,640,000	8,640,000		3,360,000
2									
3									
4									
5									
합 계					12,000,000		8,640,000		3,360,000

3. 필요경비산입 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구분	금액
⑩ 매출원가 계상	
⑪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⑫ 제조원가에 계상	
⑬ 그 밖의 계정과목에 계상	
⑭ 세무조정에 의한 필요경비 산입	
합계(⑩+⑪+⑫+⑬+⑭)	

「소득세법」 제 57 조제 1 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감면근거(발생국가의 관련법령, 조문) 등
------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 57 조제 1 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소득세법」 제 57 조제 1 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의 '예'에 'V'로 표기합니다.
(「소득세법」 제 19 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3.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예' 또는 '아니오'의 선택에 따라 다음 구분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예'를 선택한 경우: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를 작성하고 '3. 필요경비산업 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는 작성하지 않고 '3. 필요경비산업 명세'를 작성합니다.
4. ②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5. ④ 차기이월액란은 별지 제 11 호서식 부표 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⑭ 전기이월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전기 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해당 과세기간에 이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7 조제 10 항에 따라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금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
6. ⑤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은 별지 제 11 호서식 부표 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을 기재합니다.
7. ⑥ 국가별 공제한도란은 별지 제 11 호서식 부표 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⑯ 공제한도를 기재합니다.
8. ⑦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은 별지 제 11 호서식 부표 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⑰ 당기 실제세액공제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⑧ 이월배제액란은 별지 제 11 호서식 부표 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⑱ 이월배제액의 당기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⑨ 차기이월액란은 별지 제 11 호서식 부표 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⑳ 차기이월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⑩ ~ ⑭란은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과세기간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본 서식은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① 국가명	미국	② 국가코드	U	S
-------	----	--------	---	---

2. 공제한도 계산

(단위 : 원)

구분		금액
③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60,000,000
④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③ - ④)		60,000,000
감면되는 국외원천소득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	
	⑦ 감면비율	
	⑧ 차감되는 감면 국외원천소득(⑥ × ⑦)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⑤ - ⑧)		60,000,000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결손국가가 없는 경우=⑨, 있는 경우 작성방법 참조)		60,000,000
공제한도	⑪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8,640,000
	⑫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60,000,000
	⑬ 공제한도(⑪ × ⑩ / ⑫)	8,640,000
당기공제대상세액	⑭ 전기 이월액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12,000,000
	⑯ 당기 공제대상 세액 (⑭ + ⑮)	12,000,000
이월배제액	⑰ 한도초과액(⑯ - ⑬, 음수인 경우 영(0))	3,360,000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⑲ 이월배제 외국납부세액(⑰과 ⑱ 중 작은 금액)	
⑳ 차기 이월액(⑯ - ⑬ - ⑲, 음수인 경우 영(0))		3,360,000

3. 공제세액 계산

(단위 : 원)

과세기간	⑳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㉑ 전기 누적 공제액	㉒ 당초 이월배제액	㉓ 당기 공제대상 세액 (㉒-㉑-㉒=㉓)	㉔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합계≤㉓)	㉕ 이월배제액 (㉑)	㉖ 차기이월액 (㉒-㉔-㉕)
2025	12,000,000			12,000,000	8,640,000		3,360,000
당기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 57 조제 1 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가(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국가 포함)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의 ①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 ③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란은 국가별 종합 합산과세 되는 소득(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주택임대·기타소득 등 제외)을 기재합니다.

4. ④ 국외원천소득(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주택임대·기타소득 등 제외)에 대응하는 비용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7 조제 2 항에 따른 직접비용 및 배분비용을 의미합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로(연금)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연금)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연금)소득공제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5.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 11 호서식 부표 2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⑥국외원천소득'의 국가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6.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7. ⑦ 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8. ⑧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⑤에서 ⑥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음수인 경우(즉 국외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음수를 그대로 적고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에는 영(0)을 기재합니다.

9.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적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 400 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국별소득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비 고
A 국	100	500	$500 - (600 \times \frac{500}{1,000}) = 200$	$120 \times \frac{200}{400} = 60$	산출 세액 120
B 국	0	△600	0	0	
C 국	60	300	$300 - (600 \times \frac{300}{1,000}) = 120$	$120 \times \frac{120}{400} = 36$	
국내	-	200	-	-	
계	160	△600 1,000	320	96	

10.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⑫ 종합소득금액(또는 퇴직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별지 제 11 호서식 부표 2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⑦ ~ ⑨ 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12.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7 조제 10 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을 의미합니다.

13. ㉑ 과세기간란은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㉒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기재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

14. ㉓ 전기 누적 공제액란은 직전 과세기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기재합니다.

15. ㉔ 당초 이월배제액란은 외국납부세액 발생 과세기간의 이월배제액 계산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16.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7 조제 10 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7. ㉖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에는 ㉓ 공제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대로 기재합니다.

과세기간	...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단위 : 원)

① 연번	소득발생처			⑤ 소득구분 코드	⑥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		
	② 국가명	③ 코드	④ 상호(성명)			⑦ 직접	⑧ 간주	⑨ 하이브리드 (Hybrid)
1	미국	U S		배당소득 D I V	60,000,000	세목	배당소득세	
						세액	12,000,000	
2						세목		
						세액		
3						세목		
						세액		
4						세목		
						세액		
5						세목		
						세액		
6						세목		
						세액		
7						세목		
						세액		
8						세목		
						세액		
9						세목		
						세액		
10						세목		
						세액		
11						세목		
						세액		
12						세목		
						세액		
13						세목		
						세액		
14						세목		
						세액		
15						세목		
						세액		
합계						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뒤쪽)

작성 방법

- ②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⑤ 소득구분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구분을 기재하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 93 조 각 호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아래 표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코드	INT	DIV	BSI	ERN	PSN	ETC	RET

3. ⑥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배분비용을 뺀 금액입니다(직접비용·배분비용 계산 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4. ⑦~⑨ 외국납부세액란은 아래 표와 같이 「소득세법」 제 57 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구분(약자)	관련근거
⑦ 직접	「소득세법」 제 57 조제 1 항에 따른 직접외국납부세액
⑧ 간주	「소득세법」 제 57 조제 3 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⑨ 하이브리드 (Hybrid)	「소득세법」 제 57 조제 4 항에 따른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

5. ⑦~⑨ 외국납부세액란의 세목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납부한 세금의 명칭 그대로(영문 또는 한글)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⑦~⑨ 외국납부세액란의 세액은 「소득세법」 제 57 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별지 제 11 호서식 부표 3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㉔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